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10.17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9.23.

나. 제안자 : 차준택·이한구 의원(찬성 8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. 9.24.

라. 상정일자 : 2014.10.13(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차준택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희
- 심사내용 : 질의 및 토론
-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신재생에너지는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달리 각종 서비스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보급 확대 및 촉진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효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

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
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함 (안 제22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
구현하고, 행정기관과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
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
년 10월 4일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
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제31조에서 공유재산
의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
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
발전과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, 현
행 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를 하향 조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
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
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
- 현재,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반
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으나, 인
천시에서 본 조례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설
명과 함께 대부요율 변경에 따라 우리 시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
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참고로,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. 9.24.부터 10. 6.까지(12일간)
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,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임대 요율
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
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현재 기존 조례에 적용되는 요율은 어떻게 되며 임대 요율이 높아서 설치가 안 된 경우가 있는가?
⇒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50/1,000이며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음.
-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어디이며 임대 요율이 개정되면 참여업체가 많을 것인가?
⇒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공촌정수장, 수산정수장, 주안도서관이며 임대 요율 개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음.
- 임대 요율을 10/1,000으로 조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활성화 될 것임. 따라서 시설 설치 시 고정식보다는 반자동 또는 전자동식으로 설치를 해야 함.
- 10/1,000으로 개정이 되면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.
⇒ 개정이 되어도 요율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안영수·정창일·박병만·김진규 · 오흥철 · 유제홍 의원

6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)
 - 개정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
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“제2조(공유재산 임대 요율에 대한 적용례)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시설부터 적용한다.”로 수정함.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.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공유재산 임대 등)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재산 임대 요율에 대한 적용례)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시설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2조의2(공유재산 임대 등)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공유재산 임대 요율에 대한 적용례)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시설부터 적용한다.</u></p>